

농업회사법인 세종로컬푸드(주) 정관

(제 정) 2015.06.15. 정관 제1호

(개 정) 2017.01.18. 정관 제2호

(개 정) 2019.05.14. 정관 제3호

1장 총 칙

제1조(상 호) 본 회사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그 명칭은 ‘농업회사법인 세종로컬푸드(주)’라 칭한다.

제2조(목 적) 본 회사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유통·소비·교육·홍보·판매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세종시가 추진하는 로컬푸드 운동(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주의 자격) 본 회사의 주주는 농업인,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로 하되 제9조에서 정한 출자한도 내에서 출자한 비농업인도 주주가 될 수 있다.

제4조(지도·감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제5조(사 업) ① 본 회사는 식품가공사업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 및 판매사업을 주사업으로 한다.

② 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한다.

1. 농산물의 유통 및 가공, 소비, 홍보, 판매, 식품제조업, 연중 생산기반 구축
2. 영농에 필요한 자재 생산 및 공급
3. 영농에 필요한 종묘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4. 묘목생산업, 육림업, 조경수 판매업
5. 농산업 및 농산물의 계열화사업
6. 농산물관련 공동 이용시설의 설치 및 이용
7. 농산물 유통, 쇼핑몰, 방문판매, 수출입업

8. 새우, 메기, 미꾸라지 양식 및 식품 가공 판매업
9. 로컬푸드 관련 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사업
10. 제1호부터 제9호와 관련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업
11. 상기 각 호의 부대사업
12. 그밖에 지역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6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의 설치)

- ① 본 회사의 본점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둔다.
- ② 본 회사는 필요한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지점, 영업소,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7조(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 사항은 대전 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충청투데이에 게재한다.

제2장 주식과 주권

제8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800,000주로서 보통주식으로 한다.

제9조(1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000원으로 한다.

제10조(비농업인의 출자한도) 농업인, 농산물의 생산자단체가 아닌자가 출자하는 출자액의 합계는 본 회사의 총출자액의 10분의 9를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회사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00,000주로 한다.

제12조(주 권) 본 회사의 주식은 기명주식으로서 주권은 1주권, 10주권, 100주권 3종으로 한다.

제13조(주권의 명의개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본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상속, 유증, 기타 계약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본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 및 취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주식의 양도제한) ① 본 회사의 주식은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양도할 수 없다.

② 전항과 관련 비농업인인 주주에게 양도하여 비농업인의 총출자액이 제9조에서 규정한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는 효력이 없다.

③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하여 비농업인의 총출자액이 제9조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지분을 자체없이 농업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15조(주권의 재발행)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때에는 본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주권을 상실한 때에는 확정된 제권판결정본
2. 주권을 훼손한 때에는 그 주권, 다만 훼손으로 인하여 그 진위를 판별할 수 없는 때에는 전호에 준한다.

제16조(주주의 주소신고 등) 주주나 등록질권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성명, 주소 및 인감을 신고해야 한다. 그 변경이 있는 때에도 역시 같다.

제17조(주주명부의 폐쇄) 본 회사는 매 결산기 종료일 익일부터 그 결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까지 주주명부기재의 변경을 정지한다.

제3장 주주총회

제18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정기주주총회는 매 결산기 종료후 3월내에 이를 소집하고 임시 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19조(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대표이사가 유고인 때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결의사항) 주주총회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2. 주식의 분할

3.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제21조(결의)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22조(의결권의 대리행사) 주주는 본 회사의 주주중에서 정한 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총회 개회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제4장 이사와 감사

제23조(이사와 감사의 수) ① 본 회사의 이사는 7인으로 하고, 감사는 1인으로 한다.

- ② 이사 및 감사의 구성은 관계법령에 따라 공개모집 방식으로 하되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9.05.14.)
- ③ 이사 중 1인은 당연직 이사로 하며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과장 또는 로컬푸드 주관부서 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당연직 이사도 시 추천이사도 주주총회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9.05.14.)

제24조(선임)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되 이사의 1/30이상은 농업인으로 한다.

제25조(업무집행과 회사대표) 본 회사의 업무집행은 대표이사가 하고 회사대표는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받은 자로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단, 사내이사가 1인인 경우 사내이사가 법인을 대표한다.
(개정 2019.05.14.)

제25조의1(임원추천위원회) ① 본 회사의 임원을 선임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 ②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운영을 위하여 농업회사법인 세종로컬푸드 주식회사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둔다.

③ 운영규정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을 준용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제정·개정한다.
(개정 2019.05.14.)

제26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단, 경영성과 및 조직관리 역량 등 자질상의 문제, 기타 사회적 물의 등을 야기 시 인사규정에 따라 대표이사를 해임 할 수 있다.

제27조(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종결시까지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05.14.)

제28조(보 선) 이사와 감사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임시주주총회에서 그를 보선한다.

제29조(보 수) ① 대표이사의 보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따라 정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 소집 시에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

제5장 이사회

제30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들로 구성한다.

(개정 2019.05.14.)

제3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차입금 및 재산의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4. 정관 및 회사 중요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5. 회사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정관 및 다른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2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③ 임시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감사의 요청이 있거나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집한다.

④ 이사회 소집 시 부의안건을 첨부하여 회의 개최 7일 전에 그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05.14.)

제33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으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의결에 참여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투표결과가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결정한다.

③ 이사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대리인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정족수에는 당해 이사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4조(서면결의)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차기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결의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한 때에 대표이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5조(의사록 등)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녹취한 바를 바탕으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 전원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하며, 이사회 의결 후 1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이사에게 의결사항 및 의사록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6조(재산의 구분) ① 회사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자한 재산
2. 설립 후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관 등이 출자한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3. 설립 후 회사가 매입한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4. 시설임대·장비활용에서 발생한 수익금
 5. 그 밖에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재산의 과실, 사업수입, 기타 수입 등으로 구성하며, 회사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충당한다.

제37조(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그 밖에 동 재산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권리를 포기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회사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 편성 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의 용도를 변경하여 보통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다.

③ 매수, 기부채납,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재산의 유지,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38조(재산의 평가) 모든 재산은 취득 당시의 취득 가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에 따른다.

제39조(수익금의 관리) ① 대표이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익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익금 사용은 회사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여야 하며,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이내여야 한다.

제40조(회계의 원칙) 회사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거래를 발생한 사실에 의거하여 정부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단, 매 사업 년도의 잉여금은 이월손실을 보전하고도 잔여가 있을 때에는 해당사업의 관련규정에 따라 다음 사업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1조(회계연도) 회사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2조(사업계획과 예산) 회사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사업실적과 결산) 회사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결산보고서를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이익배당) 이익배당금은 매 결산기 말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위 배당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본 회사에 귀속시킨다.

제7장 해 산

제45조(해산사유) 본 회사는 다음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합병
2. 파산
3.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4. 주주총회의 결의

제46조(해산의 결의) 해산의 결의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그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다수로써 하여야 한다.

제47조(회사계속) 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제37조의 규정 중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산 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48조(해산의 통지)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외에는 대표이사는 자체없이 주주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한다.

제49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의결)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장 청 산

제50조(清算방법) 본 회사가 해산한 경우, 회사재산의 처분은 주주총회의 동의로써 정한 방법에 의한다.

제51조(청산인의 임면)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52조(잔여재산의 분배)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한다.

제9장 보 칙

제53조(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개정 2019.05.14.)

제54조(공무원 등의 파견) 회사의 안정적 운영 및 경영수지 개선 등을 위하여 시나 출자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55조(적용범위)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상법에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56조(세부내규)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회사 세부내규를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발기인 기명날인)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이 날인한다.